

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8. 10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자연재난의 대형화,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역할 분담과
-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방재조직 구성 필요성에 따라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각종 재난 발생시 민간단체의 재난관련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(안 제4조)
 - 단장 1명, 부단장 1명, 간사 1명 및 단원 등으로 구성
 -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개인, 단체, 동호회 등으로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자로 하며, 방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, 면,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음.
-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 및 임무(안 제5조)
 - 방재단의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
 -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, 행정업무 등을 담당
- 구미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(안 제7조)
 - 협의회는 방재단장,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, 읍면동대표,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
-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(안 제8조)
 -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

야에 활동

-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(안 제10조)
 - 단원이 방재단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활동확인서를 제출
 - 방재단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재단의 단원은 비상 단계 시부터 구미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음
-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(안 제13조)
 -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, 필요할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

3. 참고사항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

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, 제61조, 제62조,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은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설치한다.

제3조(명칭) 명칭은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(이하 “방재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4조(조직) ① 방재단은 단장 1명, 부단장 1명,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.

② 단장과 부단장은 읍·면·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,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

③ 간사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.

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·단체·기업체·기관·학교·종교단체·동호회 등으로 한다. 단, 방재 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.

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·면·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.

- ⑦ 읍·면·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시 지역자율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.
- ⑧ 읍·면·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(이하 “대표”라 한다) 해당 읍·면·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.

제5조(임원의 임무 등)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.

- ② 단장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.
-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,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, 회의기록,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.
- ⑤ 읍·면·동 대표는 읍·면·동 지역자율방재단의 대표가 되며, 구미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 회원이 된다.
- ⑥ 단장, 간사,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. 다만,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해임)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.

1.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
2. 단원이 시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. 다만,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3.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4.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5.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
제7조(지역자율방재 협의회) 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·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·조정을 위하여 구미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한다.

-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,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, 읍·면·동 대표,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.
-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회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.
-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.
-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, 장비,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·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제8조(임무)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,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.

-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.
 - 1. 방재단의 인적·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
 - 2.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예찰활동 및 신고·정비
 - 3. 재난 예방·대비 등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
 - 4. 재난관련 교육·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·훈련 실시
 - 5.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, 주민대피유도, 차량통제 등
 - 6.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,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
 - 7. 재난지역의 응급복구(전기, 통신, 상·하수도 등)
 - 8. 전염병 방재활동, 공중보건관리 등
 - 9. 인력, 장비, 물품 등 수요파악
 - 10.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,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, 차량통제 등 활동전개
-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범위, 시기,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.
-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

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.

- 제9조(소집)**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등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고,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.
-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. 다만,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.

- 제10조(운영 등)**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-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. 다만, 시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, 인원, 조건,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- ⑤ 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- ⑥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⑦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.
- ⑧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, 여비, 유류대등 필수경비
 2.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, 부상,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. 단,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
 3. 제복, 모자,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
 4.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
 5. 단원의 교육·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·훈련에 소요되는 비용
 6.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
 7.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
- 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1조(금지행위)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
2.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
3.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
4.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

제12조(출입증 발급)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.

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.

제13조(교육)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한다. 다만,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(민간기관 포함)

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임원 및 단원은 연 1회 4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당해 연도 “민방위교육 추진 지침”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.

제14조(훈련)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5조(중앙지원단 자문 등)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·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제16조(감독)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익월 5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폐지) 「구미시수방단운영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위 축 장

주 소
성 명

귀하를 구미시 지역자율방재 단장으로
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구미시장

[별지 제1-2호서식]

위 축 장

주 소
성 명

귀하를 구미시 ○○읍.면.동 지역자율방재 단
대표로 위 축합니다.

년 월 일

구미시장

[별지 제1-3호서식]

위 축 장

주 소
성 명

귀하를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원으로
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구미시장

[별지 제2호서식]

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<개인>

등록번호 : _____

성 명	(남 · 여)	연 령		혈 액 형	
주 소				일반전화	
				휴대전화	
자 격 증 또는 기능		운전가능여부 (면허종류)			
재 난 현장경험	※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				
희 망 활동내용	※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				
[특이사항] ※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					

상기 본인은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
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가입희망자 (인)

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

[별지 제2-2호 서식]

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<단체>

등록번호 : _____

단 체 명			대 표 자	(휴대전화)
주 소				대표전화
담 당 자	(휴대전화)		부서명	
인 원	남 명	여 명	총인원	명
장 비	장비명(규격) 대	장비명(규격) 대	장비명(규격) 대	장비명(규격) 대
지원가능	남 명	장비(규격) 대	장비(규격) 대	장비(규격) 대
	여 명			
전문분야	※ 단체의 성격 정리 예) 인명구조,이재민구조,장비지원,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			
활동희망분야	※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			
[특이사항]				
(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)				

상기 본 단체는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
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대 표 (인)

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

[별지 제2-3호서식]

[가입희망 회원명부]

[단체명]

[illegible]

[별지 제3호서식]

활 동 확 인 서 (예시)

성 명	(인)	등록번호	※ 서식2의 등록번호
활동내용	사 유	※ ○○태풍, ○○지역 집중호우, ○○지역 설해 등	
	방 법	※ 인력,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	
	시 간	○○○○년○○월○○일 부터 ~○○○○년○○월○○일 까지 (○○시간)	
	장 소	※ ○○동 ○○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	
	내 용	※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) ○○지역 사전예찰 00시간, ○○마을 차량통제, 00시간 ○○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	
[건의사항] ※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			
확인자	직위	○○동 대표	성명 (인)

본인은 구미시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
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

※ 확인자는 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

[별지 제4호서식]

단원 활동현황 총괄표

등록 번호	성 명	활 동 상 황		비고
		횟수	시간	
1				
2				
3				
⋮				

※ 등록번호

- 개인의 경우는 [별지 제2호서식]의 등록번호를 기재
- 단체의 경우는 [별지 제2-1호서식]의 등록번호와 [별지 제2-2호서식]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[(예) 10-1]

※ 횟수,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

※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

※ [별지 제3호서식]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

※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

[별지 제5호서식]

'○○년도 연중 활동계획서

[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]

월별	주요내용	비고
1	° °	
2	° °	
3	° °	
4	° °	
5	° °	
6	° °	
7	° °	
8	° °	
9	° °	
10	° °	
11	° °	
12	° °	

※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

※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

[별지 제6호서식]

출 입 증

출 입 증
사진 3×4
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원

지역자율방재단원증
NO. 000 혈액형 O(RH+)형
성 명 : 홍 길 동
주민번호 : 123456-1234567
소 속 :
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구 미 시 장

구미시장 직인 사용

참 고 자 료

□ 자연재해대책법

제66조 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) ①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, 봉사단체, 방재관련업체,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예방·대응·복구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자연재해대책법

제60조 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)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율방재단은 시·군·구 단위로 구성·운영한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·면·동 단위로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.

③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(이하 "지역자율방재단장"이라 한다)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.

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